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명의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가족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홍보대상자를 포함하는 한편,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21항 중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신청인이 다른 공동 소유자의 가족이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신청인 제출서류</p>	<p>1. 신조차·수입차</p> <p>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6서식에 따른 내압용기장치검사증(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차.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제출합니다)</p> <p>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p> <p>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아.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제출합니다)</p>	<p>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 에는 2,500원 입니다.</p>
<p>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p>	<p>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p>	

<p>「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p>	<p>[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p>
--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5. 1. 10.>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축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sup>2</sup>]

<p>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li> <li>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li> <li>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li> <li>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li> </ul> </li> <li>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li> <li>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li> <li>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li> <li>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li> </ol>	<p>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p>
<p>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li> <li>2.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li> <li>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li> <li>4. 자동차등록원부</li> </ol>	

<p>「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li> <li>[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li> <li>[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li> <li>[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li> </ul>
------------------------------------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이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85조제1항)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